

#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의 번 호	148
-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. .  
제출자 : 삼 척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주차장 확충과 관리·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이의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세입재원 (안 제 1조)

-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하여 관리·운영되고 있는 노상·노외주차장 이용요금 및 위탁수수료와 관리위반 과징금
- 도로교통법 위반 주·정차위반 과태료, 견인료, 도로법의 주차를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료
-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
- 국·도비 보조금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수입금과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의 예산액

나. 세출재원 (안 제 3조)

- 공영주차장 설치, 관리 및 운영비
- 주차장 관리 수탁자 관리 및 운영비 보조
- 노외주차장 설치자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
- 불법 주·정차 단속 비용

다.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 (안 제 4조)

라.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금액을 세출예산에  
계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 5조)

##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주차장법(이하 '법'이라 한다)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주차장특별회계(이하 '회계'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세입) ①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, 제3항,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
2. 법 제8조제1항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무관수금
3. 법 제19조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날부금
4.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
5.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검용료
6.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징수액
7. 강원도전기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
8.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관련 과징금
9. 주차시설 관련 국·도비보조금
10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
②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,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.

제3조 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.

1.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(이하 '공영주차장'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 및 운영비

2.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
3.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
4. 불법주·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

제4조(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)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.

1. 징수원 - 총무국장
2. 부인정수과 - 교통관광과장
3. 수입금출납원 - 교통지도계장

제5조(영여금처 lý) 이 회계의 결산상 영여금은 다음 연도 네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예비비)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